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1월 8일

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 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개정
 -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,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하여는 연접개발 제한 배제 규모 등을 규정(안 제29조)

: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

※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, 고시원은 제외

-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를 용도지역별로 규정 (안 제2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(기존 3개 분과위원회) (안 제72조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 폐지 내용 반영 (안 별표4)

○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정

-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후퇴 규정 완화 (안 제46조)
-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물 층수 규정 완화 (안 제58조)
-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의 거리제한규정 완화 조정 (안 별표 8~별표10)

라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해소 및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,
- 개발행위허가의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 범위를,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,

-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모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,
-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,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음.
-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,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후퇴 규정완화와,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물 층수 규정을 완화하고,
-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탁시설 설치시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 조정 한 조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